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13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유동수·김남근·허종식

김병기 • 박선원 • 민병덕

박민규 • 노종면 • 곽상언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

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3(간이조정절차) ①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이견이 없는 경우
 -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소비자분쟁이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3조 의2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의 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조정절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의3(간이조정절차) ① 제63 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법률관계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명백히 밝힌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간이조정절차 중에 소비자분쟁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3조의2에 따라 분쟁조

정회의 또는 조정부의 조정으 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조정절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